

제 안 설명서

【영주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 일부개정조례(안)】

영 주 시

영주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226
------------	-----

제출일자 : 2005. .
제출자 : 영주시장

1. 제안 이유

공무원의 직무상 비밀엄수 의무를 강화하며, 행정기관의 주 40시간 근무제가 '05. 7. 1.부터 도입됨에 따라 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공무원의 특별휴가제도를 일부 조정하고, 지방공무원복무규정이 대통령령(2005.3.18, 대통령령 제18739호)으로 제정됨에 따라 관련조항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가. 공무원의 직무상 비밀엄수 의무를 강화함(안 제3조의2)
- 나. 공무원의 1주간의 근무시간을 40시간으로 하고, 소속기관의 장은 직무의 성질 등을 감안하여 1시간의 범위내에서 점심시간을 달리 정하여 운영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
- 다. 소속기관의 장이 민원편의 등 공무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 간외근무 등을 명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
- 라. 직무의 성질상 상시근무체제를 유지할 필요가 있거나 토요일 또는 공휴 일에도 정상근무를 할 필요가 있는 기관의 경우에 근무시간과 근무일을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16조)
- 마. 2005. 7. 1부터 전면 토요일 휴무가 실시됨에 따라 늘어나는 휴가일수를 조정하기 위하여 2006년 1월부터 재직 기간별 연가일수를 1~2일 축소 함(안 제18조)

- 바. 공무원이 당해연도의 잔여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휴가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다음 연도 연가일수의 2분의 1의 범위안에서 다음 연도의 연가일수를 당해 연도에 미리 사용할 수 있게 함(안 제19조제6항)
- 사. 지방공무원의 특별휴가중 생리로 인한 여성보건휴가를 무급으로 하고, 포상휴가·장기재직휴가 및 퇴직준비휴가를 폐지하며, 경조사와 관련된 특별휴가로는 본인의 결혼, 배우자의 출산, 배우자·부모·조부모·외조부모·자녀의 사망과 관련된 특별휴가를 인정하되 휴가일수를 축소함
(안 제23조)

3. 자치법규안 : 덧 볼 임

4. 신구대비표 : 덧 볼 임

5. 참고사항

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2005.3.18 대통령령 제18739호]

나.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표준안]

영주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주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영주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를 “영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로 한다.

제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2(비밀엄수)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법령에 의하여 비밀로 지정된 사항
2. 정책의 수립이나 사업의 집행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결정이나 사업집행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경우
3. 개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관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특정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경우
4. 기타 공무원이 직무상 알게 된 사항으로서 정부나 국민의 이익 또는 행정 목적 달성을 위하여 비밀로서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제1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3조(근무시간) ①공무원의 1주간의 근무시간은 점심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으로 하며, 토요일은 휴무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공무원의 1일 근무시간은 9시부터 18시까지로 하며, 점심시간은 12시부터 13시까지로 한다. 다만, 소속기관의 장은 직무의 성질·지역 또는 기관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1시간의 범위안에서 점심시간을 달리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주 40시간 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15조의 제목 “(시간외근무 및 공휴일근무)”를 “(시간외근무 및 공휴일 등 근무)”로 하고, 동조제1항중 “사무처리상 긴급을 요한다고”를 “민원편의 등 공무수행상 필요하다고”로, “공휴일”을 “토요일 또는 공휴일”로 하며, 동조제2항 본문 중 “공휴일”을 “토요일 또는 공휴일”로 하고, 동조제2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당해기관의 업무사정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근무를 한 토요일 또는 공휴일의 다음 정상근무일에 휴무하게 할 수 없을 경우에는 다른 정상근무일을 지정하여 휴무하게 할 수 있다.

제1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6조(현업공무원 등의 근무시간과 근무일) 시장은 현업기관 및 직무의 성질상 상시근무체제를 유지할 필요가 있거나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도 정상근무를 할 필요가 있는 기관 소속공무원의 근무시간과 근무일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6조의2를 삭제한다.

제18조제1항증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적기간	연가일수
3월이상 6월미만	3
6월이상 1년미만	6
1년이상 2년미만	9
2년이상 3년미만	12
3년이상 4년미만	14
4년이상 5년미만	17
5년이상 6년미만	20
6년이상	21

제18조제3항제2호증 “제19조제4항” 을 “제19조제5항” 으로 한다.

제19조제2항 단서중 “제27조” 를 “제25조의2” 로 한다.

제19조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소속기관의 장은 공무원이 당해연도의 잔여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휴가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다음 연도 연가일수의 2분의 1의 범위안에서 다음 연도의 연가일수를 당해 연도에 미리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21조제2항증 “범위안에서 허가할 수 있다” 를 “범위안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로 한다.

제23조제3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조제6항 내지 제9항을 각각 삭제한다.

다만, 생리로 인한 여성보건휴가는 무급으로 한다.

제23조제5항중 “한국방송통신대학설치령” 을 “[한국방송통신대학교설치령]”으로 한다.

제24조의 제목 “(휴가기간중의 공휴일)” 을 “(휴가기간중의 토요일 또는 공휴일)”로 하고, 동조 본문중 “공휴일” 을 “토요일 또는 공휴일”로 한다.

별표3을 별지와 같이 한다.

제26조, 제27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2조제1항중 “지방공무원법” 을 “[지방공무원법]”으로 하고, 제10조제3항중 “재외공무원복무규정” 을 “[재외공무원 복무규정]”으로 하며, 제12조제2항중 “공무원증규칙” 을 “[공무원증규칙]”으로 하고, 제18조제2항중 “공무원연금법” 을 “[공무원연금법]”으로 하며, 제22조제1호중 “병역법” 을 “[병역법]”으로 하고, 동조제5호중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을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으로 하며, 동조제6호중 “지방공무원교육훈련법시행령” 을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으로 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제1항, 제19조제6항, 제23조제3항 및 제6항 내지 제9항과 별표3의 개정규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장기재직휴가에 관한 경과조치) 제23조제7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소속 기관의 장은 2005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2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으로서 장기 재직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2006년 6월 30까지 재직기간 중에 10일간의 장기재직휴가를 허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직기간의 산정은 제1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다.

[별표 3]

경조사별 휴가일수표(제23조제1항관련)

구 분	대 상	일 수
결혼	본인	7
출산	배우자	3
사망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5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외조부모	2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2

비고 : 휴가를 실시함에 있어서 원격지일 경우에는 실제 필요한 왕복소요 일수를 가산할 수 있다.

신·구 대 비 표

【영주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

현 행	개 정 안	개 정 이 유
<p style="text-align: center;"><u><신 설></u></p> <p>제13조(근무시간) ①공무원의 근무시간은 9시부터 18</p>	<p>제3조의2(비밀업무)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법령에 의하여 비밀로 지정된 사항 2. 정책의 수립이나 사업의 진행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결정이나 사업진행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경우 3. 개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관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특정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경우 4. 기타 공무원이 직무상 알게 된 사항으로서 정부나 국민의 이익 또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비밀로서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 <p>제13조(근무시간) ①공무원의 1주간의 근무시간은 점</p>	<p>·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의 직무상 비밀업무 의무를 강화.</p> <p>· 공무원의 1주간의 근무시간을</p>

현 행	개 정 안	개 정 이 유
<p>시까지로 한다. 다만, 토요일의 종무시간은 13시로 한다.</p> <p>②점심시간은 12부터 13시까지로 한다. 다만, 토요일에는 점심시간을 두지 아니한다.</p> <p>제15조(시간외근무 및 공휴일근무) ①소속기관의 장은 사무처리상 긴급을 요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근무시간외의 근무를 명하거나 <u>공휴일</u>의 근무를 명할 수 있다.</p> <p>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휴일에 근무를 한 경우 소속기관의 장은 그 다음의 정상 근무일을 휴무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당해기관의 업무사정 기타 할 수 있는 사유로 인하여 근무를 한 공휴일의 다음 정상 근무일에 휴무하게 할 수 없을 경우에는 다음 정상 근무일을 지정하여 휴무하게 할 수 있다.</p>	<p>점심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으로 하며, 토요일은 휴무함을 원칙으로 한다.</p> <p>②공무원의 1일의 근무시간은 9시부터 18시까지로 하며, 점심시간은 12부터 13시까지로 한다. 다만, 소속기관의 장은 직무의 성질·지역 또는 기관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1시간의 범위안에서 점심시간을 달리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p> <p>③주 40시간 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p> <p>제15조(시간외근무 및 공휴일 등 근무) ①----- 민원편의 등 공무수행상 필요하다고 ----- ----- <u>토요일 또는 공휴일</u> -----.</p> <p>②----- ----- . 다만, 당해기관의 업무사정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근무를 한 토요일 또는 공휴일의 다음 정상 근무일에 휴무하게 할 수 없을 경우에는 다른 정상 근무일을 지정하여 휴무하게 할 수 있다.</p>	<p>40시간으로 하고, 직무의 성질 등을 감안하여 1시간의 범위안에서 점심시간을 달리 운영할 수 있도록 함.</p> <p>민원편의 도모 등 소속기관장이 공무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근무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함.</p>

현 행	개 정 안	개 정 이 유																																			
<p><u>제16조(현업공무원의 근무시간) ①</u> <u>시장은 현업기관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근무시간을 따로 정할 수 있다.</u></p>	<p><u>제16조(현업공무원 등의 근무시간과 근무일) 시장은 현업기관 및 직무의 성질상 상시근무체제를 유지할 필요가 있거나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도 정상근무를 할 필요가 있는 기관 소속공무원의 근무시간과 근무일을 따로 정할 수 있다.</u></p> <p><u><삭 제></u></p>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현업부서 근무자의 상시근무 체제에 대한 근무일과 근무시간을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함. 																																			
<p><u>제16조의2(토요일휴무제) ①</u> <u>시장은 토요일에 소속공무원을 동시에 휴무하게 할 수 있다.</u></p> <p><u>②</u> <u>토요일휴무제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u></p>																																					
<p><u>제18조(연가일수) ①</u> <u>공무원의 재직기간별 연가일수는 다음과 같다.</u></p> <table border="1"> <thead> <tr> <th>재 직 기 간</th> <th>연가일수</th> </tr> </thead> <tbody> <tr> <td><u>3월이상 6월미만</u></td> <td><u>4일</u></td> </tr> <tr> <td><u>6월이상 1년미만</u></td> <td><u>7일</u></td> </tr> <tr> <td><u>1년이상 2년미만</u></td> <td><u>10일</u></td> </tr> <tr> <td><u>2년이상 3년미만</u></td> <td><u>13일</u></td> </tr> <tr> <td><u>3년이상 4년미만</u></td> <td><u>16일</u></td> </tr> <tr> <td><u>4년이상 5년미만</u></td> <td><u>19일</u></td> </tr> <tr> <td><u>5년이상 6년미만</u></td> <td><u>22일</u></td> </tr> <tr> <td><u>6년이상</u></td> <td><u>23일</u></td> </tr> </tbody> </table>	재 직 기 간	연가일수	<u>3월이상 6월미만</u>	<u>4일</u>	<u>6월이상 1년미만</u>	<u>7일</u>	<u>1년이상 2년미만</u>	<u>10일</u>	<u>2년이상 3년미만</u>	<u>13일</u>	<u>3년이상 4년미만</u>	<u>16일</u>	<u>4년이상 5년미만</u>	<u>19일</u>	<u>5년이상 6년미만</u>	<u>22일</u>	<u>6년이상</u>	<u>23일</u>	<p><u>제18조(연가일수) ①-----</u></p> <p><u>-----.</u></p> <table border="1"> <thead> <tr> <th>재 직 기 간</th> <th>연가일수</th> </tr> </thead> <tbody> <tr> <td><u>3월이상 6월미만</u></td> <td><u>3</u></td> </tr> <tr> <td><u>6월이상 1년미만</u></td> <td><u>6</u></td> </tr> <tr> <td><u>1년이상 2년미만</u></td> <td><u>9</u></td> </tr> <tr> <td><u>2년이상 3년미만</u></td> <td><u>12</u></td> </tr> <tr> <td><u>3년이상 4년미만</u></td> <td><u>14</u></td> </tr> <tr> <td><u>4년이상 5년미만</u></td> <td><u>17</u></td> </tr> <tr> <td><u>5년이상 6년미만</u></td> <td><u>20</u></td> </tr> <tr> <td><u>6년이상</u></td> <td><u>21</u></td> </tr> </tbody> </table>	재 직 기 간	연가일수	<u>3월이상 6월미만</u>	<u>3</u>	<u>6월이상 1년미만</u>	<u>6</u>	<u>1년이상 2년미만</u>	<u>9</u>	<u>2년이상 3년미만</u>	<u>12</u>	<u>3년이상 4년미만</u>	<u>14</u>	<u>4년이상 5년미만</u>	<u>17</u>	<u>5년이상 6년미만</u>	<u>20</u>	<u>6년이상</u>	<u>21</u>
재 직 기 간	연가일수																																				
<u>3월이상 6월미만</u>	<u>4일</u>																																				
<u>6월이상 1년미만</u>	<u>7일</u>																																				
<u>1년이상 2년미만</u>	<u>10일</u>																																				
<u>2년이상 3년미만</u>	<u>13일</u>																																				
<u>3년이상 4년미만</u>	<u>16일</u>																																				
<u>4년이상 5년미만</u>	<u>19일</u>																																				
<u>5년이상 6년미만</u>	<u>22일</u>																																				
<u>6년이상</u>	<u>23일</u>																																				
재 직 기 간	연가일수																																				
<u>3월이상 6월미만</u>	<u>3</u>																																				
<u>6월이상 1년미만</u>	<u>6</u>																																				
<u>1년이상 2년미만</u>	<u>9</u>																																				
<u>2년이상 3년미만</u>	<u>12</u>																																				
<u>3년이상 4년미만</u>	<u>14</u>																																				
<u>4년이상 5년미만</u>	<u>17</u>																																				
<u>5년이상 6년미만</u>	<u>20</u>																																				
<u>6년이상</u>	<u>21</u>																																				

현 행	개 정 안	개 정 이 유
<p>②(생략) ③(생략) 1. (생략) 2. <u>제19조제4항</u>의 규정에 의한 연가보상비를 지금받지 못한 잔여 연가 일수가 있는 공무원</p> <p>제19조(연가계획 및 허가) ①(생략) ②제18조의 연가일수가 7일을 초과하는 자에 대하여는 연2회 이상으로 분할하여 허가한다. 다만, <u>제27조</u>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의 국외여행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⑤(생략)</p> <p style="text-align: center;"><u><신 설></u></p> <p>제21조(병가) ①(생략) 1.~2. (생략) ②시장은 소속공무원이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요양을 요하는 경우에는 연 180일의 범위안에서 허가할 수 있다. ③(생략)</p>	<p>②(현행과 같음) ③(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2. <u>제19조제5항</u> ----- -----</p> <p>제19조(연가계획 및 허가) ①(현행과 같음) ②----- -----, --, <u>제25조의2</u> ----- ----- ③~⑤(현행과 같음) <u>⑥소속기관의 장은 공무원이 담해연도의 잔여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휴가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다음연도 연가일수의 2분의 1의 범위안에서 다음 연도의 연가일수를 담해연도에 미리 사용하게 할 수 있다.</u></p> <p>제21조(병가) ①(현행과 같음) 1.~2. (현행과 같음) ②----- ---<u>범위안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u> ③(현행과 같음)</p>	<p>부족할 수 있는 연가에 대하여 필요시 다음연도 연가일수의 1/2를 차용할 수 있도록 함.</p>

현 행	개 정 안	개 경 이 유
<p>제23조(특별휴가) ①~②(생략)</p> <p>③여자공무원은 예 생리기와 임신한 경우의 검진을 위하여 매월 1일의 여성보건휴가를 얻을 수 있다.</p> <p><u><단서 신설></u></p> <p>④(생략)</p> <p>⑤한국방송대학에 재학중인 공무원은 <u>한국방송통신대학설치령</u>에 의한 출석수업에 참석하기 위하여 제18조의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출석수업기간에 대한 수업휴가를 얻을 수 있다.</p> <p>⑥공무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속기관의 장은 1회에 한하여 6일 이내의 포상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p> <p>1. 상훈법에 의한 훈장·포장을 받은 때</p> <p>2. 정부표창규정에 의한 국무총리 이상의 표창을 받은 때</p> <p>3. 청탁봉사상 또는 자랑스런공무원 표창을 받은 때</p> <p>4. 모범공무원규정에 의한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때</p> <p>5. 주요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때</p> <p>⑦소속기관의 장은 20년이상 재직한 공무원에 대하여 재직기간중에 10일간의 장기재직휴가를 허가하여야 한다.</p>	<p>제23조(특별휴가) ①~②(현행과 같음)</p> <p>③----- ----- -----. 다만, 생리로 인한 여성보건휴가는 무급으로 한다.</p> <p>④(현행과 같음)</p> <p>⑤한국방송대학에 재학중인 공무원은 「<u>한국방송통신대학설치령</u>」에 의한 출석수업에 참석하기 위하여 제18조의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출석수업기간에 대한 수업휴가를 얻을 수 있다.</p> <p><u><삭 제></u></p> <p><u><삭 제></u></p>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05. 7. 1부터 주 40시간 근무제가 도입됨에 토요일 휴무에 따른 특별휴가 축소 또는 삭제 법령 표기법에 의함 토요휴무일에 따른 특별휴가 축소 또는 삭제

현 행	개 정 안	개 정 이 유
<p>이 경우 제직기간의 산정은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다.</p> <p>⑧ 월 15일 이상 선박에 승선 근무한 공무원은 7일이내의 승선휴가를 얻을 수 있다.</p> <p>⑨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경년퇴직이나 법 제66조의2의 규정에 의한 명예퇴직 또는 조기퇴직을 할 경력직공무원과 조례로 정하는 근무상한 연령에 도달하여 퇴직을 할 별정직공무원 및 고용직공무원은 퇴직예정일전 3월이 되는 날로부터 퇴직예정일 전일까지 퇴직준비휴가를 얻을 수 있다.</p> <p>⑩(생략)</p> <p>제24조(휴가 기간중의 공휴일) 휴가 기간중의 공휴일은 그 휴가 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휴가일수가 30일 이상 계속되는 경우와 제2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조사 휴가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제26조(겸직허가) ①공무원이 지방공무원의영리업무의 한계에관한규정(대통령령)에 의한 영리업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다른 직무에 겸직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p>	<p><삭 제></p> <p><삭 제></p> <p>⑩(현행과 같음)</p> <p>제24조(휴가 기간중의 토요일 또는 공휴일)----- 토요일 또는 공휴일----- -----.</p> <p><삭 제></p>	
		<p>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11조 와 동일한 조문임. (대통령령 18739호 2005. 3. 18)</p>

현 행	개 정 안	개 정 이 유
<p><u>②제1항의 허가는 담당직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한한다.</u></p> <p><u>제27조(정치적 행위) ①법 제57조의 규정에 있어서의 정치적 행위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정치적 목적을 가진 것을 말한다.</u></p> <ul style="list-style-type: none"> <u>1. 정당의 조직·조직의 확장 기타 그 목적달성을 위한 것</u> <u>2. 특정정당이나 정치단체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것</u> <u>3. 법률에 의한 공직선거에 있어서 특정의 후보자를 당선하게 하거나 낙선하게 하기 위한 것</u> <p><u>②제1항에 규정된 정치적 행위의 한계는 전항의 규정에 의한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함을 말한다.</u></p> <ul style="list-style-type: none"> <u>1. 시위운동을 기획·조직·지휘하거나 이에 참가 또는 원조하는 것</u> <u>2. 정당 기타 정치단체의 기본적인 신념 및 간행물을 발행·편집·배포하거나 이와 같은 행위를 원조하거나 방해하는 것</u> 	<p><u><삭 제></u></p> <p><u><삭 제></u></p>	<p>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9조와 동일한 조문임. (대통령령 18739호 2005. 3. 18)</p>

현 행	개 정 안	개 정 이 유
<p>3. 특정정당 또는 정치단체를 지지 또는 반대하거나 공직선거에 있어서 특정후보자를 지지 또는 반대 하는 의견을 집회 기타 다수인이 모인 장소에서 발표하거나 문서·도서·신문 기타의 간행물에 게 재하는 것</p> <p>4. 정당 기타 정치단체의 표지로 사용되는 기·완장· 복식 등을 제작 또는 배부하거나 이를 착용·착용 권유 또는 착용을 방해하는 행위 등 기타 명목여 하를 불문하고 금전 또는 물질로 특정정당 또는 정치단체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것</p>		

參 考 書 類

(지방공무원복무조례 (표준안),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대통령령)

1. 지방공무원복무규정조례 일부개정조례 표준안

(경상북도 총무과 - 7124, 2005. 7. 20, 경상북도 총무과 - 4263, 2005. 4. 25)

2.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대통령령 제18894호 2005. 7. 1, 대통령령 제18739호 2005. 3. 18)

‘위대한 경북 함께 뛰는 300만’

경상북도

수신자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표준안) 이첩 송부

1. 행정자치부 지방공무원제도팀-1619(2005.07.15)와 관련입니다.
2. '05. 7월부터 행정기관의 "주 40시간 근무제"가 전면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일부개정령이 '05. 7. 1 시행됐습니다.
3. 이에 따라,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 사항과 특별휴가 조정 등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서만 개정된 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표준안)을 복임과 같이 이첩 송부하오니 지방의회회기 등을 감안하여 가급적 '05. 8월까지 개정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표준안) 1부. 끝.

경상북도지사

수신자 시·군

★지방행정주사보	채용승	지방행정사무관	양인석	총무과장	07/20 안성규
협조자	지방행정주사	박태룡	지방행정주사보	장진석	지방행정사무관
시봉	총무과-7124	(2005.07.20.) 접수	총무과-5239	(2005.07.21.)	
우	702-702 대구광역시 북구 산격동 1445-3	/ http://www.gb.go.kr			
전화	(053)950-2573 /전송 (053)950-2380	/ hschae@gb.go.kr			/ 공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표준안)

1. 개정이유

행정기관의 주 40시간 근무제가 2005년 7월 1일부터 도입됨에 따라 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공무원의 특별휴가제도를 일부 조정하고, 민원편의를 위하여 점심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복무 관련 제도를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주 40시간 근무제의 실시 등(안 제13조)

지방공무원의 1주간의 근무시간을 40시간으로 하고, 소속기관의 장은 직무의 성질 등을 감안하여 1시간의 범위안에서 점심시간을 달리 정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함.

나. 시간외근무 등을 명할 수 있는 요건 완화(안 제15조)

소속기관의 장은 민원편의 등 공무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간외근무 등을 명할 수 있도록 함.

다. 근무시간 및 근무일을 따로 정할 수 있는 기관 확대(안 제16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직무의 성질상 상시근무체제를 유지할 필요가 있거나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도 정상근무를 할 필요가 있는 기관의 경우에 근무시간과 근무일을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함.

라. 특별휴가의 조정(안 제23조)

지방공무원의 특별휴가중 생리로 인한 여성보건휴가를 무급으로 하고, 포상휴가장기재직휴가 및 퇴직준비휴가를 폐지하며, 경조사와 관련된 특별휴가로는 본인의 결혼, 배우자의 출산, 배우자

부모·조부모·외조부모·자녀의 사망과 관련된 특별휴가를 인정하되,
휴가일수를 축소함.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표준안)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지방공무원복무조례”를 “○○○ 지방공무원 복무조례”로 한다.

제2조중 “지방공무원법”을 「지방공무원법」으로 한다.

제10조제3항중 “재외공무원복무규정”을 「재외공무원 복무규정」으로 한다.

제12조제2항중 “공무원증규칙”을 「공무원증 규칙」으로 한다.

제1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3조(근무시간) ①지방공무원의 1주간의 근무시간은 점심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으로 하며, 토요일은 휴무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공무원의 1일의 근무시간은 9시부터 18시까지로 하며, 점심시간은 12시부터 13시까지로 한다. 다만, 소속기관의 장은 직무의 성질·지역 또는 기관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1시간의 범위안에서 점심시간을 달리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주 40시간 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제15조의 제목중 “공휴일근무”를 “공휴일 등 근무”로 하고, 동조제1항중 “사무 처리상 긴급을 요한다고”를 “민원편의 등 공무수행상 필요하다고”로, “공휴일”을 “토요일 또는 공휴일”로 하며, 동조제2항 본문 및 단서중 “공휴일”을 각각

“토요일 또는 공휴일”로 한다.

제1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6조(현업공무원 등의 근무시간과 근무일) 도지사는 현업기관 및 직무의 성질상 상시근무체제를 유지할 필요가 있거나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도 정상근무를 할 필요가 있는 기관 소속공무원의 근무시간과 근무일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6조의2를 삭제한다.

제18조 제2항중 “공무원연금법”을 「공무원연금법」으로 한다.

제19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소속기관의 장은 공무원이 당해연도의 잔여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휴가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다음 연도 연가일수의 2분의 1의 범위안에서 다음 연도의 연가일수를 당해 연도에 미리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22조중 제1호 “병역법”, 제5호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제6호 “지방공무원교육훈련법시행령”을 각각 「병역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으로 한다.

제23조 제3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조 제6항 내지 제9항을 각각 삭제한다.

다만, 생리로 인한 여성보건휴가는 무급으로 한다.

제24조의 제목중 “공휴일”을 “토요일 또는 공휴일”로 하고, 동조 본문중 “공휴일”을 “토요일 또는 공휴일”로 한다.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

제26조, 제27조를 삭제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9조제6항, 제23조제3항 및 제6항 내지 제9항과 별표 3의 개정규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장기재직휴가에 관한 경과조치) 제23조제7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소속기관의 장은 2005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2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으로서 장기재직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2006년 6월 30일 까지 재직기간 중에 10일간의 장기재직휴가를 허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직기간의 산정은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다.

[별표 3]

경조사별 휴가일수표(제23조제1항관련)

구 분	대 상	일 수
결혼	본인	7
출산	배우자	3
사망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5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외조부모	2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2

비고 : 휴가를 실시함에 있어서 원격지일 경우에는 실제 필요한 왕복소요 일수를 가산할 수 있다.

<참고>

공무원특별휴가 조정안

구 分	현 行		조 정 안	비 고
	대 상 / 요 건	일 수		
출 산	출산 전·후 부여	90	90	
보 건	매 생리기	1	무급	
	임신한 경우 검진	1	1	
포 상	총리표창이상 등 주요업무 성공적 수행	6일이내	-	
장기 계직	20년 이상 재직자	10	-	
퇴직 준비	퇴직예정일 3월전부터	3개월	-	
재해 구호	풍수해등 피해공무원 재해지역 병사활동	5일이내	5	
경 조 사 사	본인	7	7	
	자녀	1	-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1	-	
	본인 및 배우자	5	-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	1	-	
	배우자	3	3	
조 사 사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7	5(△2)	
	본인 및 배우자의 증조부모·조부모·외증조부모·외조부모	5	2(△3)	밀줄부분만 인정
	자녀, 자녀의 배우자	3	2(△1)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형·형수·동생·제수))	3	-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와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삼촌·숙모)	3	-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2	-	
탈 상	본인 및 배우자의 증조부모· 조부모·외증조부모·외조부모	1	-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 자매의 배우자	1	-	

대통령령 제18894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일부개정령안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근무시간) ①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1주간의 근무시간은 점심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으로 하며, 토요일은 휴무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공무원의 1일의 근무시간은 9시부터 18시까지로 하며, 점심시간은 12시부터 13시까지로 한다. 다만, 소속기관의 장은 직무의 성질·지역 또는 기관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1시간의 범위안에서 점심시간을 달리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주 40시간 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다. 제4조의 제목중 "공휴일근무"를 "공휴일 등 근무"로 하고, 동조제1항중 "사무처리상 긴급을 요한다고"를 "민원편의 등 공무수행상 필요하다고"로, "공휴일"을 "토요일 또는 공휴일"로 하며, 동조제2항 본문 및 단서중 "공휴일"을 각각 "토요일 또는 공휴일"로 한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현업공무원 등의 근무시간과 근무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현업기관 및 직무의 성질상 상시근무체제를 유지할 필요가 있거나 토요일 또는 공

휴일에도 정상근무를 할 필요가 있는 기관 소속공무원의 근무시간과 근무일
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6조를 삭제한다.

부 칙

이 영은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위대한 경북’ 함께 웃는 300만’



경상북도

수신자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시행관련 복무조례 개정지침 이첩 시달

1. 행정자치부 지방공무원제도령-223(2005.4.15)의 이첩 내용입니다.
2.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시행(2005.3.18)과 관련하여 「지방공무원복무조례」 개정지침을 볼임과 같이 이첩 시달하오니 복무조례 개정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볼임 : 1.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시행관련 복무조례 개정지침 1부
2. 「지방공무원 복무조례(표준안)」 1부
3.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1부. 끝.

경상북도지사

수신자 시·군

재총장	지방행정사무관	양인석	총무과장	안성규	자치행정국장	전결04/25 이영우
원조자	지방행정주사	심상명				
시행	총무과-4263	(2005.04.25.) 접수	총무과-3050	(2005.04.26.)		
우	702-702 대구광역시 북구 산격동 1445-3	/	http://www.gb.go.kr			
전화	(053)850-2573 /전송 (053)850-2380	/	hschae@gb.go.kr	/	공개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시행관련 복무조례 개정 지침

- 지방자치단체 복무조례로 규정된 사항중 국민생활과 직결되거나 전국적인 통일을 요하는 사항을 복무규정으로 규정함에 따라
- 복무규정과 충돌되는 조례를 개정함으로써 해당 자치단체 주민 및 소속공무원의 혼란을 방지하려는 것임

□ 추진 배경

- 공무원 “주40시간 근무제” 시행에 따른 결손시간을 보충하기 위하여 동절기 근무시간을 연장하고자 하였으나
 - 일부 자치단체가 복무조례에서 이를 반영치 아니하여 자치 단체별 근무시간이 서로 달라 주민 혼란과 국가기관과의 형평성 등 문제가 발생함
- 이에 따라, 지방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 중 근무시간, 영리업무의 금지 등 전국적인 통일을 필요로 하는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 국민 불편을 방지하고, 공무원간 형평성 문제 등 해소

□ 복무규정 주요내용

- 지방공무원의 근무시간을 9시부터 18시까지로 하되, 자치단체 장이 시간외근무 등을 명할 수 있도록 함(제2조 내지 제6조)
- 공무원의 재직기간별 연가일수와 연가보상비 지급 근거를 정함(제7조)
- 정치운동 및 집단행위의 금지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공무원의 범위를 정하고, “정치적 행위”的 정의를 명확히 함

(제8조 내지 제9조)

* 「지방공무원법 제3조 제3항의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규정」 폐지

- 공무원이 종사할 수 없는 영리업무의 한계를 정하고, 겸직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도록 함(제10조 내지 제11조)

* 「지방공무원의 영리업무의 한계에 관한 규정」 폐지

□ 대통령령과 조례간 상호 관계

- 근거 : 지방공무원법 제59조(공무원의 복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 법이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대통령령 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복무규정과 복무조례간 상호관계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대통령령)에서 지방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근무시간 등 최소한의 사항만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각 자치단체는 상위 법령의 범위안에서 지방공무원 복무 전반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할 수 있고
- 현재 조례로 규정하고 있는 내용 중 복무규정과 상충되는 조항은 상위법 우선의 원칙에 따라 무효이므로 개정이 필요함

- * 근거 : 지방자치법 제15조(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지방공무원복무조례(표준안)

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목적) 이 조례는 ○○광역시(*특별시·도·시·군·자치구)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복무선서) ①공무원은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임할 때에 소속기관의 장 앞에서 선서를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선서는 별표 1의 선서문에 의한다.

제 3 조 (책임완수) 공무원은 주민전체의 봉사자로서 직무를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장의와 성실로써 말은 바 책임을 완수하여야 한다.

제3조의2(비밀업무)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1. 법령에 의하여 비밀로 지정된 사항
2. 정책의 수립이나 사업의 집행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결정이나 사업집행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경우
3. 개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관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특정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경우
4. 기타 공무원이 직무상 알게 된 사항으로서 정부나 국민의 이익 또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비밀로서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제 4 조 (근무기강 확립) ①공무원은 법령 및 직무상의 명령을 준수하여 근무기강을 확립하고 질서를 존중하여야 한다.

②공무원은 별표 2의 공직자의 행동률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 5 조 (친절·공정) ①공무원은 공과 사를 명백히 분별하고, 주민의 권리를 존중하며, 친절·공정하고 신속·정확하게 모든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②공무원은 주권을 가진 국민의 수임자로서 국민의 신임을 획득하기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 6 조 (근검·절약) ①공무원은 화목단결하여 직장분위기를 명랑하게 조성하여야 한다.

②공무원은 소박하고 검소한 생활을 영위하여 모범적인 가정을 이룩하여야 한다.

제 7 조 (당직 및 비상근무) ①휴일 또는 근무시간외의 화재·도난 그 외 사고의 경계와 문서처리 및 업무연락을 하기 위한 일적·숙적·방호원 그 이외의 당직근무자는 모든 사고를 방지하여야 하며,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소속기관의 장은 전시·사변 또는 천재지변 기타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의 발생 또는 이의 대비를 위한 훈련의 경우에는 이에 따른 근무상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당직 및 비상근무자는 무단히 근무장소를 이탈하지 못하며, 당직 및 비상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 8 조 (출장공무원) ① 상사의 명을 받아 출장하는 공무원(이하 "출장공무원"이라 한다)은 당해 공무수행을 위하여 전력을 다하여야 하며, 사사로운 일을 위하여 시간을 소비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출장공무원은 지정된 출장기일 안에 그 임무를 완수하지 못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전화·전보 그 외의 방법으로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야 한다.

③ 출장공무원이 그 출장용무를 마치고 귀정한 때에는 지체없이 소속기관의 장에게 구슬 또는 문서로 복명하여야 한다.

제 9 조 (겸임근무) ① 법 제30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겸임 근무하는 자는 복무에 관하여 본직기관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다만, 겸임업무와 관련한 복무에 관하여는 겸임기관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② 겸임근무하는 자가 겸임업무와 관련하여 정계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겸임기관의 장은 당해 겸임근무자의 본직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 10조 (파견근무) ① 법 제30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기관에서 파견근무하는 자는 복무에 관하여 파견받은 기관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② 다른 기관에서 파견근무하는 자가 그 파견기간 중에 정계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파견받은 기관의 장은 당해 파견근무자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국외의 정부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연구기관 등에 파견되는 공무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제외공무원복무규정(대통령령)을 준용한다. 이 경우 시장(*도지사·군수·구청장)은 공관장에게 국외에 주 재하는 소속공무원의 직무수행 기타 복무에 관한 감독권을 위탁하여야 한다.

제 11조 (해직원 공무원의 근무) 해직된 공무원에 대하여 사무인계 또는 임무처리상 필요한 경우에 소속기관의 장은 15일을 한도로 계속 근무하게 할 수 있다.

제 12조 (복장 등) ① 공무원은 근무 중 그 품위를 유지할 수 있는 단정한 복장을 착용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의 신분증 발급 및 휴대 등에 관하여는 공무원증규칙(총리령)을 준용한다.

제 2 장 근무시간

제 13조(근무시간) ① 공무원의 근무시간은 9시부터 18시까지로 한다. 다만, 토요일의 종무시간은 13시로

한다.

② 점심시간은 12시부터 13시까지로 한다. 다만, 토요일에는 점심시간을 두지 아니한다.

제 14조(근무시간등의 변경) 시장(*도지사·군수·구청장)은 직무의 성질·지역 또는 기관의 특수에 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근무시간 또는 근무일을 변경할 수 있다.

제 15조(시간외근무 및 공휴일근무) ① 소속기관의 장은 사무처리상 긴급을 요한다고 인정할 때에; 제13조 및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근무시간외의 근무를 명하거나 공휴일의 근무를 명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휴일에 근무를 한 경우 소속기관의 장은 그 다음의 정상근무일을 휴무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당해기관의 업무사정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근무를 한 공휴일의 다음 정상근무일에 휴무하게 할 수 없을 경우에는 다른 정상근무일을 지정하여 휴무하게 할 수 있다.

제 16조 (현업공무원의 근무시간) 시장(*도지사·군수·구청장)은 현업기관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근무시간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6조의2(토요일휴무제) ① 시장(*도지사·군수·구청장)은 토요일에 소속 공무원을 휴무하게 할 수 있다.

② 토요일 휴무제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도지사·군수·구청장)이 정한다.

제 3 장 휴 가

제 17조 (휴가의 종류) 공무원의 휴가는 연가·병가·공가 및 특별휴가로 구분한다.

제 18조 (연가일수) ① 공무원의 재직기간별 연가일수는 다음과 같다.

재 직 기 간	연 가 일 수
3월이상 6월미만	
6월이상 1년미만	3
1년이상 2년미만	6
2년이상 3년미만	9
3년이상 4년미만	12
4년이상 5년미만	14
5년이상 6년미만	17
6년이상	20
	21

② 제1항의 재직기간이라 함은 공무원연금법 제23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재직기간을 말하되, 휴직기간(법령에 의한 의무수행이나 공무상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휴직한 경우를 제외한다)·정직기간 및 직위해제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 당해 연도에 결근·휴직·정직 및 직위해제 사실이 없는 공무원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다음에 한하여 제1항의 재직기간별 연가일수에 각각 1일을 가산한다.

1. 병가를 알지 아니한 공무원

2. 제1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연가보상비를 지급받지 못한 잔여 연가일수가 있는 공무원

제 19조 (연가계획 및 허가) ① 시장(*도지사·군수·구청장)은 소속공무원의 연가가 특정한 계절에 편중되지 아니하고 공무원 및 그 배우자의 부모생신일 또는 기일이 포함되도록 연가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8조의 연가일수가 7일을 초과하는 자에 대하여는 연 2회이상으로 분할하여 허가한다. 다만, 제25조의 2의 규정에 의한 공무 외의 국외여행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연가는 오전 또는 오후의 반일 단위로 허가할 수 있으며, 반일연가 2회는 연가 1일로 계산한다.

④ 소속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으로부터 연가원의 제출이 있을 때에는 공무수행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

⑤ 공무상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연가를 허가할 수 없거나 당해 공무원이 연가를 활용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연가일수에 해당하는 연가보상비를 지급하고 연가에 갈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가보상비를 지급할 수 있는 연가대상일수는 20일을 초과할 수 없다.

제 20조 (연가일수에서의 공제) ① 절근일수·정직일수 및 직위해제 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한다.

② 법령에 의한 외무수행이나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휴직한 경우를 제외한 휴직은 당해년도의 휴직기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연가일수를 월할계산한다. 이 경우 휴직일수가 15일이상은 1월로 계산하고, 15일미만은 계산하지 아니하며, 월할계산에 의하여 산정된 연가일수가 소숫점이하일 경우 0.5일 이상은 반올림하고, 0.5일 미만은 절사한다.

○ 휴직자의 연가일 12월-당해연도 휴직기간(월) × 당해연도 연가
수 = 12월 일수

③ 질병이나 부상 외의 사유로 인한 자각·조퇴 및 외출의 누적 8시간은 연가 1일로 계산한다.

④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병가 중 연간 6일을 초과하는 병가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한다. 다만, 의사의 진단서가 첨부된 병가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제 21조 (병가) ① 소속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경우에는 연 60일의 범위 안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치참·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병가 1일로 계산하고, 제2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가일수에서 공제하는 병가일수는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2. 천열병의 이환으로 인하여 그 공무원의 출근이 다른 공무원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

② 시장(*도지사·군수·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의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요양을 요하는 경우에는 연 180일의 병여안에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③ 병가일이 7일 이상일 경우에는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 22조 (공기) 소속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에 직접 필요 한 기간 공가를 허가하여야 한다.

1. 병역법 기타 다른 법령에 의한 정병검사·소집·검열정호 등에 응하거나 동원 또는 훈련에 참가할 때
2. 공무에 관하여 국회·법원·검찰 기타 기관에 소환된 때
3.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투표에 참가할 때
4. 승진·전직시험에 응시할 때
5.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건강진단을 할 때
6. 지방공무원교육훈련법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어 능력시험에 응시할 때
7. 천체지변·교통차단 기타의 사유로 출근이 불가능할 때
8. 을림픽·전국체전 등 지방 또는 국가단위 주요행사에 참가할 때

제 23조 (특별휴가) ① 공무원은 본인이 결혼하거나 기타 경조사가 있을 경우에는 별표 3의 기준에 의한 경조사휴가를 얻을 수 있다.

② 임신중의 여자공무원에 대하여는 그 출산의 전후를 통하여 90일의 출산휴가를 허가하여야 한다.

③ 여자공무원은 예 생리기와 임신한 경우의 검진을 위하여 매월 1일의 여성보건휴가를 얻을 수 있다.

④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자공무원은 1일 1시간의 육아시간을 얻을 수 있다.

⑤ 한국방송통신대학에 재학중인 공무원은 한국방송통신대학설치령에 의한 출석수업에 참석하기 위하여 제18조의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출석수업기간에 대한 수업휴가를 얻을 수 있다.

⑥ 공무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속기관의 장은 1회에 한하여 6일 이내의 포상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

1. 상훈법에 의한 훈장·포장을 받은 때
2. 정부표창규정에 의한 국무총리 이상의 표창을 받은 때
3. 청렴봉사상 또는 자랑스런공무원 표창을 받은 때
4. 모범공무원규정에 의한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때
5. 주요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때

⑦ 소속기관의 장은 20년이상 근속한 공무원에 대하여 제직기간중에 10일간의 장기근속휴가를 허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근속기간의 산정은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다.

⑧ 월 15일이상 선박에 승선근무한 공무원은 7일이내의 승선휴가를 얻을 수 있다.

⑨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정년퇴직이나 법 제66조의2의 규정에 의한 명예퇴직 또는 조기퇴직을 할 경력공무원과 조례로 정하는 근무상한연령에 도달하여 퇴직을 할 별정직공무원 및 고용직공무원은 퇴직 예정일전 3월이 되는 날로부터 퇴직예정일 전일까지 퇴직준비휴가를 얻을 수 있다.

⑩풍해·수해·화재 등 재해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공무원과 재해지역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하고자 하는 공무원은 5일이내의 재해구호휴가를 얻을 수 있다.

제 24조 (휴가기간 중의 공휴일) 휴가기간 중의 공휴일은 그 휴가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휴가일수가 30일이상 계속되는 경우와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조사휴가의 경우에는 그러 하지 아니하다.

제 25조 (휴가기간의 초과) 이 조례가 정한 휴가일수를 초과한 휴가는 결근으로 본다.

제 25조의2 (국외여행) 공무원은 휴가기간의 범위내에서 공무외의 목적으로 국외여행을 할 수 있다.

제 4 장 영리업무 및 겸직

제 26조 (영리업무의 금지) 공무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공무원의 직무상의 농률의 저해, 공무에 대한 부당한 영향,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의 취득 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에 종사할 수 없다.

1. 공무원이 상업·공업·금융업 그 밖의 영리적인 업무를 스스로 경영하여 영리를 추구함이 현저한 업무를 행하는 것
2. 공무원이 상업·공업·금융업 그 밖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의 이사·감사·업무를 집행하는 무한책임사원·지배인·발기인 그 밖의 임원이 되는 것
3. 직무와 관련이 있는 타인의 기업에 투자하는 행위
4. 그 밖에 계속적으로 재산상의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를 행하는 것

제 27조 (겸직허가) ①공무원이 제26조의 영리업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다른 직무를 겸직하고자 하는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사전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제1항의 허가는 담당직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한한다.

제 5 장 정치 운동

제 28조 (공무원의 범위) 「지방공무원법」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지방의회의원
2. 선거에 의하여 취임한 지방자치단체의 장

제 29조 (정치적 행위) ①「지방공무원법」 제57조의 규정에 있어서의 정치적 행위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치적 목적을 가진 것을 말한다.

1. 정당의 조직·조직의 확장 그 밖의 그 목적달성을 위한 것
2. 특정정당이나 정치단체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것
3. 법률에 의한 공직선거에 있어서 특정의 후보자를 당선하게 하거나 낙선하게 하기 위한 것

② 제1항에 규정된 정치적 행위의 한계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함을 말한다.

1. 시위운동을 기획·조직·지휘하거나 이에 참가 또는 원조하는 것
2. 정당 그 밖의 정치단체의 기관지인 신문 및 간행물을 발행·편집·배부하거나 이와 같은 행위를 원 조하거나 방해하는 것
3. 특정정당 또는 정치단체를 지지 또는 반대하거나 공직선거에 있어서 특정후보자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의견을 집회 그 밖에 다수인이 모인 장소에서 발표하거나 문서·도서·신문 그 밖의 간행물에 게재하는 것
4. 정당 그 밖의 정치단체의 표지로 사용되는 기·완창·복식 등을 제작 또는 배부하거나 이를 착용·착용권유 또는 착용을 방해하는 행위 등 그 밖의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금전 또는 물질로 특정정당 또는 정치단체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것

제30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제1항의 규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005. 3.18 대통령령 제18739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1조(목적) 이 영은 「지방공무원법」의 규정에 의한 지방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근무시간) ①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근무시간은 9시부터 18시까지로 한다. 다만, 토요일의 종무시간은 13시로 한다.

②점심시간은 12시부터 13시까지로 한다. 다만, 토요일에는 점심시간을 두지 아니한다.

제3조(근무시간 등의 변경)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직무의 성질·지역 또는 기관의 특수성에 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근무시간 또는 근무일을 변경할 수 있다.

제4조(시간외근무 및 공휴일근무) ①소속기관의 장은 사무처리상 긴급을 요한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근무시간외의 근무를 명하거나 공휴일의 근무를 명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휴일에 근무를 한 경우 소속기관의 장은 그 다음의 정상근무일을 휴무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당해 기관의 업무사정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근무를 한 공휴일의 다음 정상근무일에 휴무하게 할 수 없을 경우에는 다른 정상근무일을 지정하여 휴무하게 할 수 있

다.

제5조(현업공무원의 근무시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현업기관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근무시간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6조(토요일휴무제)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토요일에 소속공무원을 휴무하게 할 수 있다.

②토요일휴무제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다.

제7조(연가일수 및 연가보상비의 지급) ①공무원의 재직기간별 연가일수는 다음과 같다.

재 직 기 간	연 가 일 수
3월 이상 6월 미만	3
6월 이상 1년 미만	6
1년 이상 2년 미만	9
2년 이상 3년 미만	12
3년 이상 4년 미만	14
4년 이상 5년 미만	17
5년 이상 6년 미만	20
6년 이상	21

②제1항에서 재직기간이라 함은 「공무원연금법」 제23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재직기간을 말하되, 휴직기간(법령에 의한 의무수행이나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휴직한 경우를 제외한다)·정직기간 및 직위해제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당해 연도에 결근·휴직·정직 및 직위해제 사실이 없는 공무원으로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다음 해에 한하여 제1항의 재직기간별 연가일수에 각각 1일을 가산한다.

1. 병가를 얻지 아니한 공무원

2.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연가보상비를 지급받지 못한 잔여 연가일수가 있는 공무원

④공무상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가를 허가할 수 없거나 당해 공무원이 연가를 활용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연가일수에 해당하는 연가보상비를 지급하고 연가에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가보상비를 지급할 수 있는 연가대상일수는 20일을 초과할 수 없다.

제8조(공무원의 범위) 「지방공무원법」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지방의회의원

2. 선거에 의하여 취임한 지방자치단체의 장

제9조(정치적 행위) ① 「지방공무원법」 제57조의 규정에 있어서의 정치적 행위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치적 목적을 가진 것을 말한다.

1. 정당의 조직·조직의 확장 그 밖의 그 목적달성을 위한 것
2. 특정정당이나 정치단체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것

3. 법률에 의한 공직선거에 있어서 특정의 후보자를 당선하게 하거나 낙선하게 하기 위한 것

② 제1항에 규정된 정치적 행위의 한계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함을 말한다.

1. 시위운동을 기획·조직·지휘하거나 이에 참가 또는 원조하는 것
2. 정당 그 밖의 정치단체의 기관지인 신문 및 간행물을 발행·편집·배부하거나 이와 같은 행위를 원조하거나 방해하는 것
3. 특정정당 또는 정치단체를 지지 또는 반대하거나 공직선거에 있어서 특정후보자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의견을 집회 그 밖에 다수인이 모인 장소에서 발표하거나 문서·도서·신문 그 밖의 간행물에 게재하는 것
4. 정당 그 밖의 정치단체의 표지로 사용되는 기·완장·복식 등을 제작 또는 배부하거나 이를 착용·착용권유 또는 착용을 방해하는 행위 등 그 밖의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금전 또는 물질로 특정정당 또는 정치단체를 치지 또는 반대하는 것

제10조(영리업무의 금지) 공무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공무원의 직무상의 능률의 저해, 공무에 대한 부당한 영향,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의 취득 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에 종사할 수 없다.

1. 공무원이 상업·공업·금융업 그 밖의 영리적인 업무를 스스로 경영하

여 영리를 추구함이 현저한 업무를 행하는 것

2. 공무원이 상업·공업·금융업 그 밖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체의 이사·감사·업무를 집행하는 무한책임사원·지배인·발기인 그 밖의 임원이 되는 것

3. 직무와 관련이 있는 타인의 기업에 투자하는 행위

4. 그 밖에 계속적으로 재산상의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를 행하는 것

제11조(겸직허가) ①공무원이 제10조의 영리업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다른 직무를 겸직하고자 하는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사전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제1항의 허가는 담당직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한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제1항의 규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폐지) 지방공무원의영리업무의한계에관한규정 및 지방공무원법제3조제3항의공무원의범위에관한규정은 각각 이를 폐지한다.